

『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(안) 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.

☐ 본 조례안은
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5.8.4 공포되어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 체계를 갖추게 되었음으로,
-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현행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통합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.

☐ 본 조례안의 내용은

- 종전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유재산관리조례와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와 대동소이하나,

○ **상이한 주요내용으로는**

- 가.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산정기준 조정 (안제16조)
- 나. 토지의 지하·지상공간에 대한 대부료 산정근거 마련 (안제28조)
- 다. 대부료·사용료 납기일 조정 (안제33조)
- 라. 수의매각 대상 범위 확대 (안제38조)
- 마. 물품관리대상 비품 하한선 조정 (안제61조 『별표2』)

□ **검토의견**

- 법령의 구성 및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제안되었고, 2005. 11. 28에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표준안을 따랐으며, 사용료·수수료의 징수 기준은 타 구와 형평을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으로 본 조례안은 적정하다 하겠습니다.

- **다만, 안제10조 제2항의 “재산의 유지관리비는** 사용료 및 대부료 (연체료·변상금을 포함한다)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” 는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, 동법 제16조의 수입대체 경비의 직접사용규정에 위배됨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또한, 안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제2항에 있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의 오기정정이 관보16172호(2006.1.16)로 있었으므로 제1호 “영 제38조 제1항 제7호·제8호·제13호의 규정”은 “영 제38조 제1항 제6호·제7호·제12호의 규정”으로, 제5호 “영 제3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”은 “영 제3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”으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며, 같은 이유로 안제38조(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)제1항의 “영 제38조 제1항 제24호”는 “영 제38조 제1항 제23호로 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.

○ **부칙에 있어서는**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의 “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”는 새 조례 제정까지의 현 조례의 존속경과 규정으로 사료되므로,

현 조례에 의거 처분된 사항의 효력·경과 조치로 “부칙 제3조(사용·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사용·수익허가·대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”는 규정을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6. 2. 21

보고자 : 김 찬 재